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지 방 연 구 직 및 지 도 직 공 무 원 의

임 용 등 에 관 한 규 정
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(’21.1.12. 공포) 및 「지방공무원법」(’21.00.00. 시행)
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
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임용권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(안 제5조, 제24조)
 -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도 임용권 부여
- 나.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권한범위를 시·군·구의회의 의장에게 동일하게 적용(안 제21조)
 - 연구관·지도관에 대한 임용 시험요구 등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·도지사 경유 절차를 거치는 사항에 대해 시·군·구의회의 의장은 시·도의회의 의장을 거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[시·도회의의 의장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회의의 의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]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본문 중 “도지사를”을 “도지사를, 시·군·구의회의 의장은 시·도회의의 의장을 각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·도의 인사위원회”를 각각 “각각 해당 시·도의 인사위원회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특별자치도지사를”을 “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·도회의의 의장을”로, “시·도 인사위원회”를 “각각 해당 시·도의 인사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임용후보자의 전직) ① 임용령 제15조에 따라 별표 1의 각 직렬에 임용 또는 추천될 수 있는 임용후보자는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이 임용 또는 추천하려는 직렬로의 전직 예정 직급별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(교육규칙을 포함한다. 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	제5조(임용후보자의 전직) ① ---- ----- ----- ----- <u>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[시·도회의의 의장 및 시·군·구의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회의의 의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]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시험 실시기관) ① 연구관 및 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(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<u>도지사를</u> 거친다)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. 다만, 일반 승진시험 및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<u>시·도의 인사위원회</u> (교육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실시	제21조(시험 실시기관) ① ---- ----- ----- ----- <u>도지사를, 시·군·구의회의 의장은 시·도회의의 의장을 각각</u> -----. ----- ----- ----- <u>각각 해당 시·도의 인사위원회</u>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한다.	---.
② 제1항 외의 연구직 및 지도 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 자의 요구에 의하여 <u>시·도의 인사위원회</u> 가 실시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각각 해당 시·도의 인사위원회</u> --.
제24조(일반 승진시험의 요구) ① 임용권자(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사, 지도사의 시·도 단위 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<u>특별자치도지사를</u>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의 일반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 에는 그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 재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 진후보자 명부(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사·지도사의 시·도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 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	제24조(일반 승진시험의 요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 지사”라 한다) 및 시·도회의의 의장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예정인원(결원과 예상결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<u>시·도 인사위원회</u> 위원장에게 시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. ② ~ ④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각각 해당 시·도의 인사위원회</u> -----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47